

2019년도 제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3. 14.(목요일), 9: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분과위원장 대행),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의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6건(안건번호 제2019-1469호~151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1인 미디어 플랫폼의 VOD 스트리밍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469호)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음원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리자가 직접 게시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 부결하고, SNS 내 영화 파일 게시물 3개 안건(제2019-1470호~1472호)은 심의시점 현재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 청구된 계정 1,327건(안건번호 제2019-1081호~2407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4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01개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7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사이트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사이트명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사이트명은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1469호~151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66건임
안전번호 제2019-1469호는 1인 미디어 플랫폼 BJ가 VOD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이며, 안전번호 제2019-1470호~1472호는 SNS에 영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1469호 1인 미디어 플랫폼 BJ가 게시한 멜론 TOP100차트 음원의 영상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를 보여주며) 게시물 하단에 “○○○ ○△△에서는 □□□□□□를 통해 음원 저작권료를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로 문의해주세요”라고 음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 B 위원 : 최근 ○○○○△△와 □□□□□□의 분쟁에 대한 상황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 B 위원 : 분쟁 상황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힘
- A 위원 : 방송사는 ▽▽▽▽▽▽와 □□□□□□하고 연간 음악방송에 대한 저작권료를 협상함
방송사가 저작권료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허락을 받아 음악을

방송하는데 ○○○○△△는 방송사처럼 저작권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와 신탁단체의 민사소송 내용에 이용허락계약 체결한 금액을 높여달라고 □□□□□□가 소송하였으나 패소함

- A 위원 : ○○○○△△가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봐야함
방송사는 방송사가 주체인 반면, ○○○○△△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BJ가 주체임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침해주체는 ○○○○△△가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BJ로 방송사하고는 다르다고 사료됨

- 성원영 전문위원 :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보면 ○○○○△△가 신탁단체와 계약을 맺었고, 대내적으로는 1인 방송 BJ와 ○○○○△△가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을 했을 것으로 사료됨
○○○○△△와 □□□□□□가 계약할 때 수익배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계약내용에 수익배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신탁단체가 주장했을 것임

- A 위원 : ○○○○△△가 저작권단체 및 신탁단체와 이용계약이 없었다면 시정권고의 검토 필요성이 있지만 ○○○○△△와 저작권단체하고 이용허락 계약이 있으므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 A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각주 11번에 있으며, 2017년 5월에 '○○○○△△관계자는 한국▽▽▽▽▽▽▽,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원 사용계약을 완료했다'라고 기사에 나옴
- B 위원 : ○○○○△△와 신탁단체와의 분쟁은 분쟁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469호는 만장일치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1470호~1472호 친목도모를 위한 밴드에 게시된 영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를 보여주며) 밴드 게시물의 댓글을 보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고 정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해당 밴드는 지역을 닉네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골프 동호인들의 지역모임으로 보임
밴드 이름을 보면 지역 제한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밴드 가입은 개인정보 공개 후 가입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회원자격 요건이 있음
승인된 사람들에 한하여 밴드정보에 접근가능하며, 최신영화를 MP4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금번 심의 안건과 유사하게 밴드에 올려진 영화 저작물을 2분과위원회와 3분과위원회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맞다고 답변함
- B 위원 : 2분과위원회와 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밴드와 유사한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비슷한 규모의 밴드였다고 답변함
- B 위원 : 2분과와 3분과에서 심의한 밴드에서도 최신영화를 게시하였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맞다고 답변함
- B 위원 : 일반인이 신고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익명의 일반인이 신고했다고 답변함
- B 위원 : 해당 밴드를 어떻게 찾아서 신고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금번 심의안건은 사안이 특수하여 신고내용을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음
신고자는 "저작권법 위반 및 불법 다운로드 및 전파 영화, 음악, 만화 영상의 건
직접적인 제작사에게 또는 고발 네이버 밴드측에 할수 없기에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상 신원 노출에 불편하고 노출을 원치 않으니 철저히 신경써 주시어 바로 잡아주십시오

밴드내 다운로드로 시청 감상 하고 2차적 3차적으로 전파될 수 있고 과거부터 다운로드전파하고 삭제시키고 반복되며 밴드내 불법이니 조심하라는 공지속에서 비밀리에 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업무 속에 캡처한 것만으로도 명백히 불법이니 등안시 말아주시고 빠른 처단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신고함
게시물을 캡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밴드 회원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됨

- B 위원 : 회원이 보기에도 심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으로 사료됨 비공개밴드지만 기존 다른 분과에서도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 시정권고를 하였으므로 게시자에게 경고 차원으로 경고의 시정권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 A 위원 : B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네이버에 경고의 시정권고하여 밴드 운영자에게 경고문이 전달되었을 때 ‘비공개밴드로 운영 중인데 밴드 상황을 어떻게 아냐’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와 같은 민원이나 정보제공청구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답변함
익명의 일반인이 보호원에 심의대상 밴드를 신고하였고, 보호원이 밴드 게시물의 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밴드에서 2명의 게시자가 여러 건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그 중 일부만 심의대상이 된 것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470호~1472호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69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안전번호 제2019-1470호~147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안전번호 제2019-1473호~1514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81호~2407호 중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4개 안전,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5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01개 안전은 부결하

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22.

분과위원장 대행 강호갑

위원 정태호